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대 대상 중 수도권 외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43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대 대상 중 수도권 외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 업을 우선적으로 우대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3.
3. 회부연월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컨설팅,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대 대상 중 수도권 외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인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생략)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 ----- ----- -----, <u>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1)에 따르면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하며,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²⁾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³⁾.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2)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을 말함.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년~'24년)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 2024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106.7만개로 2020년 104.7만개보다 1.9% 증가하였고, 2024년 비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48.3만개로 2020년 48.7만개보다 0.8% 감소하였으며, 2024년 전체 창업기업 중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비중은 45.3%로 2020년 46.5%에서 1.2%p 감소함.

최근 5년간 창업기업 동향

(단위: 만개,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체 창업(A)	104.7	110.1	111.2	111.2	106.7
비수도권 창업(B)	48.7	49.8	50.6	51.0	48.3
비 중(B/A)	46.5	45.2	45.5	45.9	45.3

주: 부동산업 제외 수치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게 되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 및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08호, 2025.1.21. 공포]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률은 비수도권 등 우대지역 창업기업이기만 하면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보다 그 대상의 범위가 넓으므로⁴⁾, 이를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 시행된 법률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59

4)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청년·여성·장애인 창업기업등에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대의 정도는 개정안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 ('24,억원)	지원내용	우대조건
TIPS R&D	1,304	팁스*(TIPS) 운영사가 (예비)창업기업을 선별하여 1~2억원을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 최대 15억원 (3년간)을 매칭 지원 * TIPS : T ech I ncubator P rogram for S tartup	선정평가시 비수도권 (예비)창업기업에 가점 2점 부여 (가점 만점: 3점)
예비창업패키지	630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 선정시 지역안배 ·예비: 전국 27개 중 비수도권 17개 ·초기: 전국 20개 중 비수도권 12개 ·도약: 전국 13개 중 비수도권 8개
초기창업패키지	549	유망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대상으로 자금,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 * 특화프로그램 예시: 여성 과학기술인 창업컨설팅, 소셜벤처 컨설팅 등	
창업도약패키지	593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대기업 연계 등 도약기 창업프로그램을 지원	
재창업자금 융자	1,000	폐업으로 인해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 자금을 융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 창업기업

사업명	예산 ('24,억원)	지원내용	우대조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3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자 발굴 및 기술창업 지원	입주기업 선정평가 가점 1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46	1인 창조기업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	입주기업 선정평가 가점 1점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793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쏠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지원	서면평가 가점 1점
재창업자금 (융자)	1,000	폐업으로 인해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 자금을 융자	최대 대출한도 우대 (시설 60억원 → 100억 원, 운전 5억원 → 10억 원), 금리 인하(0.1%p)
예비창업패키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30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	사내벤처팀(여성팀장) 서면·발표평가 각 1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 창업기업

사업명	예산 ('24,억원)	지원내용	우대조건 ('24. 8월 현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3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자 발굴 및 기술창업 지원	입주기업 선정평가 가점 1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46	1인 창조기업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	입주기업 선정평가 가점 1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창업기업

사업명	예산 ('24,억원)	지원내용	우대조건 ('24. 8월 현재)
재도전성공패키지	168	사업 경험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재창업자를 발굴하고,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40% 내외 선발
재창업자금 (융자)	1,000	폐업으로 인해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 자금을 융자	융자금리 고정(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